

[서식 예] 건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 △ 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〇〇. 〇. 〇.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소유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소재 부속건물 〇〇조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〇〇평 〇〇홉에 대한 건물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원고 소유인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부속건물 ○○조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○○평 ○○홉이 불법 건축한 건물이라고 하여 건축법 및 행정대집행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20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철거하라고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.
- 2. 그러나 위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, 그 철거의무를



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,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이 사건과 같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을 행정관청이 묵인 내지용인한 경우 및 이건 건축물의 면적과 그 사용용도, 위치, 규모 등을 감안할 때철거를 함으로써 얻는 공익의 보호가치와 계고처분의 취소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 중 후자가 크고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 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계고서

1. 갑 제2호증

사실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1통1. 접수증 사본1통

1. 영수증(취득세)사본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 부 서 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 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